

3.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·모범 등의 문구 표시

[본조신설 2014. 1. 16.]

[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<2014. 1. 16.>]

제21조의3 삭제 <2019. 6. 28.>

제21조의4(화물위탁증의 발급) ① 법 제11조제13항 본문(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서 "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·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<개정 2016. 1. 7., 2016. 6. 30., 2018. 12. 31., 2023. 12. 27. >

1. 위탁자·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
2.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. 다만, 다수의 화주가 동일한 위탁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3. 관련 운송사업자,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운송사업자등"이라 한다)의 성명 및 연락처
4. 화물적재요청자(수탁자에게 화물의 적재에 관하여 제5호의 사항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)
5. 적재요청사항(적재를 요청한 화물의 종류, 중량 및 부피를 말하며, 부피를 기재할 때에는 화물의 길이·너비 및 높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)
6.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
7.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운임
 7의2. 해당 화물운송을 최초로 위탁한 운송사업자등(다른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재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8.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정보
 - 가. 유형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에 따른 유형을 말한다)
 - 나. 최대적재량
 - 다. 자동차등록번호

② 법 제11조제13항 본문에 따른 화물위탁증(전자문서로 된 화물위탁증을 포함한다)은 운송사업자등이 그 발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.
<개정 2011. 12. 31., 2016. 1. 7., 2018. 12. 31., 2023. 12. 27. >

③ 법 제11조제13항 단서에 따른 화물위탁증은 해당 화물의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자·수탁자, 화주, 화물의 출발지·도착지 및 적재요청사항이 모두 동일한 화물을 1일 1회 이상 운송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1일 1회만 발급할 수 있다.
<신설 2016. 1. 7., 2016. 6. 30., 2018. 12. 31. >

④ 운송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<개정 2011. 12. 31., 2016. 1. 7., 2023. 12. 27. >

⑤ 법 제11조제13항 단서(법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"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.
<신설 2016. 1. 7., 2016. 6. 30., 2018. 12. 31., 2019. 6. 28., 2022. 9. 30. >

1. 사업자단체가 운영하는 화물정보망,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영하는 화물정보망 또는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망(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물정보망만 해당한다)을 통하여 운송을 위탁한 화물
2.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화물에 관하여 이 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한 이사회(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3.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가 위·수탁자주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화물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한 화물
4. 「항만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별로 해당 항만의 구역 내에서만 운송되는 화물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[제39조에서 이동, 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<2016. 6. 30.>]